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23진정0500300 경찰의 부당한 현행범인 체포 및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

진 정 인 1. ○○○
2.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피 해 자 ○○○

피진정인 1. ●●●(前 □□경찰서장)
2. △△△(前 □□경찰서 수사과장)
3. ◇◇◇(이하 □□경찰서 수사과)
4. ▽▽▽
5. ■■■
6. ▲▲▲
7. ■■■

주 문

□□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 부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현행범 체포 및 경찰 장구 사용, 신체적 물리력 행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고, 피진정인 1은 피진정경찰서 서장으로 현장 총괄지휘자, 피진정인 2는 피진정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체포·검거 현장책임자, 피진정인 3~7은 실제 피해자를 체포·검거한 수사과 경찰관이다.

피해자는 집회 현장에 많은 수의 경찰력이 투입되어, 경찰관들과 노조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고, 망루 위의 노동자가 다칠 것을 우려하여 상황을 조율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다. 그러나 당시 구조, 구급 상황이 아님에도 소방대원들이 안전매트 등 소방 장비를 사용하려고 하는 등 위법하고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를 소방대원들의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피해자는 체포될 당시 양손에 아무런 도구를 들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여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지 않은 채 다시 엎드리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신체 각 부위를 결박하고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짓누른 뒤 뒷수갑을 채우는 방식으로 구속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23. 5. 29. 23:00경 피진정경찰서 지휘부 단체대화방에 도로에 망루를 설치하여 교통이 통제되는 상황이 올라와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 등이 순차적으로 현장에 도착하여 확인한바, 피해자 등이 4차로 전체 차로에 망루를 설치하고 차량과 끈으로 차선을 막아, 원활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집회신고 방법을 일탈한 상황이 확인되어, 피진정인 1 주재하여 피진정인 2, 경비교통과장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망루 위에서 농성을 하는 노동자를 자진하여 내려오도록 설득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소방서에 협조 요청하여 안전매트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2023. 5. 30. 08:00경 4차로는 차량이 전혀 통행할 수 없었고, 반대편 2차로도 안전고깔을 설치하여 양방향으로 교행하도록 하였지만, 교통방해가 발생하여, 이를 제거하고 집회신고 방법을 지키지 않은 불법행위를 제지해야 했고, 피진정인 3~7은 피해자를 체포 및 검거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같은 날 08:50경 노조원 중 1명이 불상의 액체로 가득 찬 플라스틱 통을 밧줄에 묶어 망루 위로 반입하려는 것을 현장 경찰관이 제지하여 압수하였다. 이후 다른 위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망루 주변을 기동대가 둘러싸고, 소방서를 통해 안전매트 설치를 시도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노조원의 방해로 설치에 실패하였고, 피진정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이 노조원들에게 안전매트 설치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같은 날 09:45경 피해자가 계속해서 안전매트 설치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면서 밀치는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공무집행방해와 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가 명백하여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진정인 3~7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의 행위를 제지하였으

나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피진정인 3~7과 다른 노조원들이 뒤섞여 넘어졌고, 이에 피진정인 4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죽지 부분을 눌러 제압하고 뒷수갑을 사용하여 현행범으로 체포 하였다. 피진정인 4가 피해자를 체포한 후 곧바로 일으켜 세웠으며 다른 경찰 장구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 이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적법한 장구 사용이었다. 피해자의 건장한 체격, 집회 현장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저항의 정도, 체포 당시 및 주위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나 이는 최소한의 물리력 사용이라고 판단되었고, 피해자는 당시 현행범이었고 그를 체포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수갑 사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수갑을 사용하였으며, 흥분된 상태의 피해자의 저항으로 자·타해의 우려가 높아 불가피하게 뒷수갑을 사용하여 체포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체포 당시 현장 채증영상, 진정인 제출 사진, 현행범인체포서, 물리력사용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국◆◆ ◆◆◆◆◆◆조합은 다음과 같은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개최일시: 2023. 5. 25. 00:00 ~ 2023. 6. 20. 23:59
- 개최목적: 일방적 노사관계 규탄 및 투명한 임금 교섭

- 개최장소: ◎◎동 □□□□소 1문, 2문, 정문, 소본부 정문, 소본부 후문, □□복지센터 앞 각각 하위 1개 차로 100m, ㉠㉠동 홈플러스 사거리, 컨테이너부두사거리, 컨테이너 사거리 □□시청 정문 앞 좌우 인도 30m, 신한은행(㉠㉠점) 앞 도로 50m, ㉡㉡아트홀 건너편 하위 1개 차로, ㉢㉢역 앞 하위 1개 차로 100m, □□□□소 ㉣㉣대 진·출입로 하위 1개 차로, □□□□소 본부 정문 앞 인도 4개위
- 시위방법: 현수막 게첨, 방송차 방송 송출, 구호 제창

나. 피진정경찰서에서는 위 집회신고에 따라 '0529 □□지역 ■■■■■■
 ■■■노조 고공농성 집회 현장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2023. 5. 30. 08:30 피진정인 1이 주재하고, 경비교통과장, 수사과장, 정보과장, 교통관리계장, 정보계장이 참여한 현장 대책회의를 실시하였으며, 당일 동원된 경찰력은 경비, 정보, 교통분야 등 총 258명이었다.

다. 피해자는 2023. 5. 30. 09:45경 □□시 ▨▨1길 69 ◎◎복지센터 앞에서 소방대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라. 피해자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범죄사실 및 체포사유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혐의자는 2023. 5. 30. 09:45경 □□시 □□□□회관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설치된 7m 망루 위에서 고공농성이 계속되는 중, 추락 사고 위험 방지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소방대원들이 망루 아래에서 안전매트를 설치하고자 진입하였으나, 그 앞을 가로막아 설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소방대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임.

[체포의 사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혐의자의 범죄혐의점 확인되거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되어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 피혐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하거나, 변명을 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 체포한 것임.

마. 피해자는 같은 날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체포적부심 청구권 등을 고지받았다는 권리고지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바. 피진정인 6이 작성한 물리력사용보고서에는 사용 경위 및 사후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사용경위]

- 2023. 5. 30. 09:45경 □□시 ▣▣1길 69에 있는 □□□□소 복지센터 앞 '□□지역 ▣▣▣▣▣▣▣▣노조' 집회 현장에서 지상으로부터 약 7미터 높이 망루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노조원(사무처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해 안전매트를 설치하고자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 3명이 진입 시도 하였으나 대상자(○○○ 위원장)를 포함한 같은 노조원 수명이 막아 1차 진입 시도가 무산되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구두 고지 한 후, 2차 진입하려는 위 소방대원들을 대상자가 재차 진로를 가로막고 고성을 지르면서 노조원들을 선동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들고 있던 생수병의 물을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림

- 당시 상황으로 보아 대상자의 선동으로 인해 다수 노조원들의 난동이 발생하여 현장에 있던 다수 인원의 몸싸움으로 번져 여러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위와 같은 구두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난동 행위가 지속되어 소방대원들의 안전매트 설치가 방해되었으며, 체포 과정에 대상자가 몸부림을 치는 등 강하게 저항하였고, 노조원들이 몸으로 막아서며 체포 과정을 방해하여 이를 제지하고 대상자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 장구인 수갑을 사용하고 현행범 체포한 것임

[사후조치]

- 대상자 수갑 채워 체포 후 호송차량에 인치
- 대상자 조사 후 통증 호소하여 ○○○○○○병원 내원(단순 타박상 및 염좌로 주사 처치 및 약물 복용 진단)

사. 피진정인들과 진정인이 제출한 피해자 체포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 피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직전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현장 경찰관들을 향해 작은 생수병의 물을 뿌리는 장면이 확인됨.
- 당시 현장에서 소방대원 3명이 안전매트를 들고 망루쪽으로 이동하고 피해자는 이동하는 경로에 가서 서있었고, 소방대원에게 물리력을 사용하며 이동을 막거나 하는 장면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 위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동시에 에워쌌고, 피해자는 이에 경찰들의 물리력 행사에 저항하며 들고 있던 500ml 생수병의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몸과 얼굴이 아스팔트 바닥에 눌러 뒷수갑이 채워진 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

5. 판단

가. 현행범 체포 관련

1) 판단기준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부당한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며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다만 「헌법」 제12조 제3항의 단서 규정과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써 현행범 체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범 체포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체포 당시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의 접촉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써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227 판결 등).

따라서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당장에 체포하여야 할 사정이 없다면 자진출석을 권유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등 임의적 수사 방법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사전에 경고 또는 고지한 후 실력행사에 착수하는 등 현행범 체포 행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현행범 체포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사실 다항 및 라항을 보면 피진정인 3~7은 피해자가 소방대원들의 안전매트 설치를 방해한 행위를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로 인정하면서, 피

해자가 이러한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그리고 인정사실 바항을 보면 피해자와 노조원들이 소방공무원들이 안전매트를 설치하기 위해 이동하는 동선에 서서 몸으로 이를 제지한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그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서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촉성, 행위의 가벌성은 인정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뚜렷함에도 피해자가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체포의 사유로 들고 있는데, 피해자가 체포될 당시 영상을 보면 피진정인 3~7이 소방대원 옆에 서 있는 피해자를 둘러싸고 제압하면서 몸과 얼굴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등 체포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십여 초 정도로 이 동안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서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장면을 확인하기 어렵다. 아울러 피해자는 ●●●●노동조합연맹 위원장으로 당시 집회와 시위를 지휘하고 있었고, 통상 대규모 집회 및 시위의 경우 관할 경찰서 정보과에서 집회 및 시위를 지휘하는 대표자에 대한 사전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현장을 지휘하는 경찰관들과도 수차례 자신이 노조위원장임을 밝히면서 대화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 동영상으로 확인되는바,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체포한 것은 정당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집회 현장에서는 경찰들이 동영상으로 채증하는 등 피해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당시 집회 현장 주변에는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경찰 약

258명이 출동하여 망루와 주변을 경비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피해자의 도주를 우려할 상황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회 현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노조원들과 경찰관들이 서로 지속적으로 대화로 설득하였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만한 급박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 3~7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현행범 체포 행위로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자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물리력 행사 및 수갑 사용 관련

1) 판단기준

피의자 등에 대한 경찰 장구 사용과 관련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는 현행범의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의 물리력 사용에 관하여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2장 2.1. 대상자 행위에는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의 5단계로 구별하는데, 규칙 2.1.2. 소극적 저항은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고, 경찰관이 정당한 이동 명령을 발하였음에도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등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일부러 몸의 힘을 모두 빼거나, 고정된 물체를 꼭 잡고 버팀으로써 움직이지 않으려는 상태 등을 말함. 이에 대한 대응으로 규칙 2.2.1. 협조적 통제가 있는데 이는 순응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으로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위 규칙 3.4.2. 수갑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에서는 경찰관은 대상자의 언행,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칙 3.3.2. 신체적 물리력 사용 한계 및 유의 사항에서는 대상자 행위가 '적극적 저항'인 경우(저위험 물리력), 경찰관은 '적극적 저항'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에게 목을 압박하여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는 방법, 팔·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 다리를 걸거나 둘러메는 등 균형을 무너뜨려 넘어뜨리는 방법, 대상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눌러 제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경찰의 물리력 및 경찰 장구 사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사실 사항을 보면 피해자는 체포될 당시 몸으로 소방대원들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3~7을 포함한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제압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500ml 생수병에 있는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경찰관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물

건이나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저항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이는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 말하는 소극적 저항으로 볼 수 있어 수갑 사용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갑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가장 덜 침해적인 방식을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피해자 1명을 제압하면서 피진정인 3~7 외 다수의 경찰관이 투입되어,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을 때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양쪽 팔을 붙잡거나 신체의 일부를 잡는 정도의 방법 등 충분히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도, 넘어진 피해자를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얼굴을 바닥에 닿게 짓누르며 뒷목을 제압한 상태로 뒷수갑을 채웠는데, 이는 당시 피해자의 저항 정도를 고려할 때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2.1.3.에서 정하는 ‘적극적 저항’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신체적 물리력 행사의 한계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의 저항의 정도가 뒷수갑을 사용할 만큼의 도주나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우려가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

위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 1과 2는 당시 시위 현장의 경찰을 총괄하고 지휘하면서 피해자 검거·체포 현장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3~7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 등의 행위를 묵인한 점, 피진정인 3~7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며 경찰 장구 사용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용한 점에서, 이들의 행위는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9. 26.

위원장 김 용 원

위원 김 종 민

위원 이 한 별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 제지

4.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 경찰관(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5.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2장 대상자 행위와 경찰 물리력 사용의 정도

2.1. 대상자 행위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보일 수 있는 행위는 그 위해의 정도에 따라 ① 순응 ② 소극적 저항 ③ 적극적 저항 ④ 폭력적 공격 ⑤ 치명적 공격 등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2.1.1. 순응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에 따르는 상태를 말한다. 다만, 대상자가 경찰관의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고 약간의 시간만 지체하는 경우는 '순응'으로 본다.

2.1.2. 소극적 저항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경찰관이 정당한 이동 명령을 발하였음에도 가만히 서있거나 앉아 있는 등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일부러 몸의 힘을 모두 빼거나, 고정된 물체를

딱 잡고 버텨으로써 움직이지 않으려는 상태 등이 이에 해당한다.

2.2. 경찰관 대응 수준

대상자 행위에 따른 경찰관의 대응 수준은 ① 협조적 통제, ② 접촉 통제 ③저위험 물리력 ④중위험 물리력 ⑤고위험 물리력 등 다섯 단계로 구별한다.

2.2.1. 협조적 통제

‘순응’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하거나 협조에 따른 물리력을 말한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현장 입장

나. 언어적 통제

다.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

라. 안내·체포 등에 수반한 신체적 물리력

제3장 개별 물리력 수단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3.3. 신체적 물리력 사용

3.3.1. 신체적 물리력의 정의

‘신체적 물리력’은 여타 무기나 경찰장구에 의존하지 않고 경찰관 자신의 신체, 체중, 근력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통제하는 일련의 방법을 말한다.

3.3.2. 신체적 물리력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가. 대상자가 ‘순응’하는 경우(협조적 통제)

경찰관은 ‘순응’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를 인도 또는 안내하기 위해 대상자

의 손이나 팔을 힘을 주지 않고 잡을 수 있고 어깨 등 신체 일부를 힘을 주지 않고 밀거나 잡아끌 수 있다. (다만, 임의동행하는 대상자를 인도·안내하는 경우에는 동행의 임의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체 접촉에 유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상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수갑 등으로 결박하기 위해 대상자 신체 일부를 잡거나 대상자를 돌려 세울 수 있다.

나. 대상자 행위가 '소극적 저항'인 경우(접촉 통제)

경찰관은 '소극적 저항'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를 통제하기 위해 손이나 팔을 힘을 주어 잡을 수 있고 대상자의 어깨 등 신체 일부를 힘을 주어 밀거나 잡아끌 수 있다. 대상자가 물체를 꼭 잡고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신체 일부를 쥐거나 누르거나 비틀어서 손을 떼도록 할 수 있다.

다. 대상자 행위가 '적극적 저항'인 경우(저위험 물리력)

경찰관은 '적극적 저항' 이상인 상태의 대상자에게 목을 압박하여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는 방법, 팔·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 다리를 걸거나 들쳐 매는 등 균형을 무너뜨려 넘어뜨리는 방법, 대상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눌러 제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4. 수갑 사용

3.4.1. 수갑의 정의

수갑은 대상자의 동작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대상자의 양쪽 손목에 걸쳐서 채우는 금속 재질의 장구로서 경찰청이 지급 또는 인정한 장비를 말한다.

3.4.2. 수갑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가. 경찰관은 대상자의 언행,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